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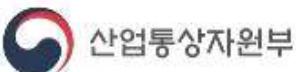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수급세대 선정 지침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수급세대 선정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22년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대상자”라 함은 신청 시점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로서, 소득 및 사용 에너지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대상세대”라 함은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말한다.
5. “수급자”라 함은 지원사업 수급 결정이 완료되어 지원사업을 받는 자를 말한다.
6. “수급세대”라 함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말한다.
7. “신청인”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로서, 대상자 본인을 말한다.
8. “대리인”이라 함은 신청인 세대의 세대원(신청인 본인을 제외한다)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른 대리인(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자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 받은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담당 공무원 등을 말한다.
9. “난방용 등유·LPG 쿠폰”(이하 “등유·LPG 쿠폰”이라 한다)이라 함은 차상위계층 세대의 난방용 등유·LPG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발행한 종이쿠폰을



산업통상자원부

2023. 03

말한다.

10. “등유·LPG 판매소”라 함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등유·LPG 판매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세대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 세대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2년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
3.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제4조(사업 신청·접수)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하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외에 신청인의 대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을 경우 직권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지원사업 신청서 상의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여부, 등유·LPG 보일러 사용 여부, 타 난방비, 급여 등 중복 수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자격의 검토) ① 시·군·구청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청장 등”이라고 한다.)은 제4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격 조사표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2. 제3조 각호의 연탄쿠폰·연료비 및 급여 수급 여부
3.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수용 여부
4. 신청인 세대의 주(主) 난방수단(등유 보일러 또는 LPG 보일러 설치 여부)
② 제1항제4호의 난방수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난방수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例 : LPG 배관망 사업을 실시한 주택으로, 시·군·구청장이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 등은 제1항제4호의 난방수단 확인 업무를 이장·통장·반장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급세대 결정) 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해 자격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한 명단을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은 필요시 시·군·구청장 등에게 제1항의 수급세대 결정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 등에게 수급세대 결정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급세대 결정 통지) 시·군·구청장 등은 “수급세대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지원 결정 여부,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제8조(수급세대 발굴) 시·군·구청장 등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판내의 수급세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부 칙 <2023.03.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서				
(3쪽 중 제1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소득구분	[] 차상위계층			
난방수단	[] 등유보일러 [] LPG보일러			
대상자 확인사항				
동절기 난방비지원 등 수혜 현황	연탄쿠폰 수급세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2. 대상자로 확정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 발급 가능 3.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인지 확인 4. '22년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 여부 확인 5.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지 확인 6.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지 여부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첨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난방용 등유·LPG 쿠폰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세대원,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지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정보는 등유·LPG 쿠폰 발급 및 충복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자격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세대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등 업무에 활용 • 등유·LPG 쿠폰 제작 및 배송,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증복지원금지에 관련한 사항 등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및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복지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LPG 구입비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사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급세대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사용중지) 결정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대상자)	성명 주 소	(앞쪽)			
[] 적합					
<p>귀하의 신청내역을 조사·심의한 결과,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난방용 등유·LPG 쿠폰 발급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수급자 성명	지원 금액	지원 형태	사용 가능 기간		
		쿠폰	2023. 3.27 ~ 2023. 6.30		
<p>* 난방용 등유·LPG 쿠폰 사용처 : 전국 등유·LPG 판매소</p>					
[] 부적합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수혜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예 : 사망, 이사, 연료전환 등 그 밖의 사유 기입 요망)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신청기간 내 신청자격을 갖춘 후 다시 신청할 경우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쿠폰 사용중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쿠폰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input type="checkbox"/>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input type="checkbox"/> 등유·LPG 쿠폰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난방용 등유·LPG 쿠폰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수급자 준수사항

- 난방용 등유·LPG 쿠폰은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등유·LPG 쿠폰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관리해야 하며, 제3자가 소지·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전출입, 이사 등의 사유로 등유·LPG 보일러를 제외한 다른 난방수단을 이용하게 된 경우 등유·LPG 쿠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이사를 가게 된 경우 등유·LPG 쿠폰을 지참하고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쿠폰에 기재된 주소 정보 등을 수정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등유·LPG 쿠폰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등유·LPG 쿠폰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LPG 쿠폰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유·LPG 쿠폰의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급자격 확인서

성명	예) 홍길동	생년 월일	예) 19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점검 일자	예) '22.03.09
----	-----------	----------	------------------	-----	------------------	----------	-----------------

순번	확인사항	확인결과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②	타 에너지이용권·연료비 및 급여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 수급[])
③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세대원 중 일부만 수용, 또는 수용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적합(세대원 전원 수용)
④	대상세대의 주 난방수단 (등유 또는 LPG 보일러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등유 보일러[], LPG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기타 점검 의견 : (추가의견 및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소속:

확인자 성명 :

(인 / 서명)